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0.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차해엽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현행화하고 주택가 자투리땅주차장 발
굴 포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개정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현행화(안 제4조의6)
-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 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별표 3)
- 참전유공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추가(안 별표 1 비고 제6호 바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및 제안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및 지급 기준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의6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제목을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최대 설치면 수 제한 규정 삭제 및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현행화하였으며,
 - 안 제27조와 별표3에서는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과 관련하여 신설함.
 - 별표1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으로 시대의 흐름과 요구 사항에 따라 개정되어 왔으며 우리 구 또한 조례 제정 이후 27번이나 개정되었음. 금번 제출된 안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의 현행화를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음.
 - 우리 구는 주택가의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주택가 빈집, 나대지 등의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이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안 제27조에서는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지 발굴 및 제안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신설하고자 하였음.
 - 안 별표1 비고 제6호 바목의 참전유공자의 주차요금 할인 대상 추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는 타당한 규정 신설로 보임.
 -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 관리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08 호
----------	---------

제출연월일: 2024. 9.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현행화하고 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포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현행화(안 제4조의6)
- 나.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 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별표 3)
- 다. 참전유공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추가(안 별표 1 비고 제6호 바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4. 8. 22. ~ 9. 11./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의 제목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표시는”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 총 수(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른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 ① 구청장은 주택가 빈집, 나대지 등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지 발굴 및 제안 등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차장확충 사업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자투리땅주차장 조성 부지 토지소유자
2.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3. 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 자투리땅주차장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비고 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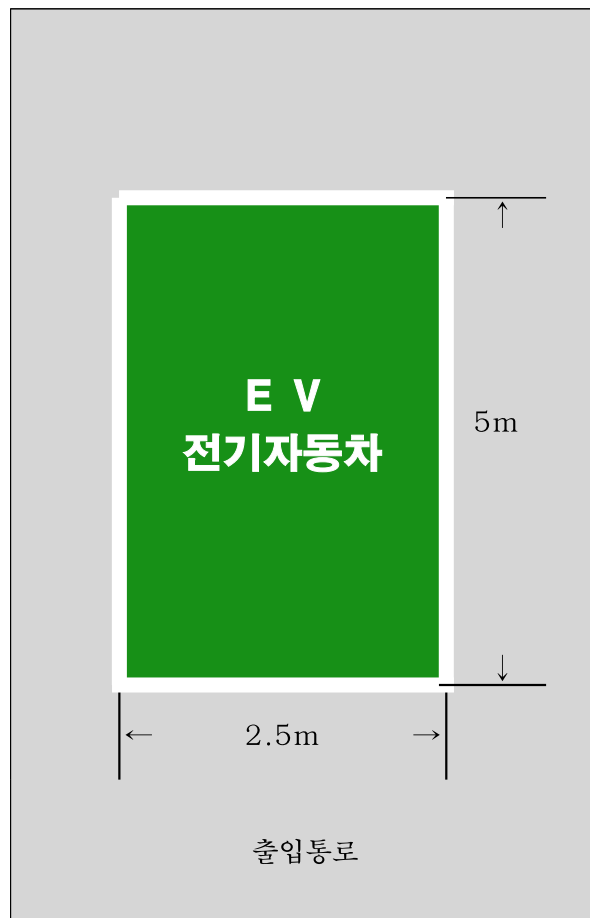
(단위: 원)

구 분	포 상 금
발굴 주차면수 1~5면	200,000
발굴 주차면수 6~10면	300,000
발굴 주차면수 11~20면	500,000
발굴 주차면수 21면 이상	1,000,000

※ 동일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 주차구획)

※ 제4조의6제3항 관련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세로 5m 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사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의6(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u></p> <p><u>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u></p> <p><u>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4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 총 수(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u>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u></p> <p><u>2.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u></p> <p><u>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에 따른다.</u></p> <p><u>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표시는 -----</u> <u>-----</u> <u>-----.</u></p> <p><u>제27조(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 ① 구청장은 주택가 빈집,</u></p>

나대지 등 자투리땅주차장 조성
지 발굴 및 제안 등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차장확
충 사업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아
니한다.

1. 자투리땅주차장 조성 부지
토지소유자

2.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람

3. 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

4.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이 완료
되지 않은 경우

③ 자투리땅주차장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
다.

제27조 (생략)

제28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내역

-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포상금: 연간 10,000천원('25 본예산 편성 예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3. 미첨부 사유

- 2025년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포상금 (단위: 건, 천원)

기준 주차면	기준 포상금	발굴건수	포상금액
합 계		20	10,000
1~5면	200	5	1,000
6~10면	300	5	1,500
11~20면	500	5	2,500
21면이상	1,000	5	5,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교통국 주차문화과 안형복
연 락 처	02-2670-3899